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65일 24시간 긴급복지 지원 상담·신청해 드립니다.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소득·재산 기준 (2020년)



소득	356.2만원 이하 (월, 4인기준)	
재산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2020년)

지원종류	지원내용		최대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지원	1,230,000원 (월,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3,000,000원 이내 (회)	2회
	주거지원	대도시 643,200원 이내 (월, 4인기준)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월, 4인기준) 농어촌 243,200원 이내 (월,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0,500원 (월, 4인기준)	6회
부 가 급 여	교육지원	초 221,600원/분기 중 352,700원/분기 고 432,2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4회)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000원 (월, 동절기10~3월)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최대)	1회 (연료비 6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

(2020년 7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함)

재산 기준 재산 차감기준 신설로 지역별 3,500만원~6,900만원 재산기준 상향효과

금융재산기준 공제비율 조정을 통해 가구별 61만~258만 금융재산 기준 상향효과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사유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단, 지급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